

의안 번호	제3307호
----------	--------

김포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9월 4일 김현주 의원, 유매희 의원
-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9월 12일
-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9월 12일
- 라. 의 결 일 자 : 2023년 9월 12일

2. 개정이유

-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갑질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보호하고 지원함과 동시에 김포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의장의 책무 및 갑질 행위 근절 대책 수립·시행(안 제3조 ~ 제5조)
-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 등 (안 제6조 ~ 제7조)
- 갑질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안 제8조)
-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안 제9조)
- 보복 행위 신고 및 거짓 신고 금지 (안 제10조 ~ 제11조)
- 협조자 보호 (안 제12조)
- 갑질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 (안 제13조)
- 갑질 예방 직장교육 의무화에 대한 사항 (안 제14조)

4. 검토의견

- 갑질 행위 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에 법제화 되어 있음.

- 금번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정부는 공공분야 갑질을 선도적으로 근절하고, 그 성과를 민간으로 확산하고자 2018년 7월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기로 하고, 같은 해 12월 ‘공무원 행동강령’에 공무원 갑질 행위의 개념과 유형을 구체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음.

- 이어서 2019년 2월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작성 배포하여 그동안 다소 추상적이었던 갑질의 개념과 기준을 정립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적용하도록 하였음.
한편, 김포시는 2018년 8월부터 김포시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을 개시 하였으며, 2018년 12월 김포시 갑질 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음.
2023년 2월에는 김포시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김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해 오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지자체 집행기관 갑질 관련 조례상 갑질행위자 범위의 사각지대인 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회 구성원 대상의 갑질 조례를 최초 제정한 전라북도의의회(2022년 4월 제정) 등 7개 의회(세부내역 별첨) 조례처럼 갑질 행위 근절을 통한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발의된 것으로 보임.

○ 법제처 입법건설팅 결과 회신에 따른 조례안 내용 검토결과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갑질유형으로 규정한 6개 항목을 기재정한 7개 의회와 동일하게 갑질행위로 정의하였으며, 갑질 근절 대책 수립 및 직장 교육 의무화,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 갑질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갑질 행위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에 대해 규정하여 갑질 근절에 대한 인식개선 촉진과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위한 입법 취지는 적절하다고 사료됨.

아울러, 의회 조례로 갑질 행위 피해자 범위를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 등까지 확대하여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사항과 관련된 규정이 지자체장의 인사권한을 사전적·적극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 등도 피해자 범위에 포함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법제처의 입법 건설팅상 법리적 검토의견임.

○ 향후 조례 제정 시행시 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갑질 행위 근절 대책 수립은 직원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구체적인 사안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우리 의회 특성에 맞는 추진체계가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담직원과 전문가 인력의 역할이 크므로 세부추진 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여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한 특별 권력관계에서 갑질 행위 신고자와 피신고자간 갑질 행위 여부 판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 사건 관계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운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

○ 갑질 행위의 예방·감시·처벌을 넘어 일상 생활 속 의식과 행동변화를 통한 갑질 근절 문화 확산을 위해 김포시의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및 운영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주문사항 : 없음

11.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원안 붙임

김포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회 공무원 등”이란 김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 소속 공무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2. “김포시 공무원 등”이란 「김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갑질 행위”란 김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의회 공무원 등이 다른 의원, 의회 공무원 등 또는 김포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편의 등 사적(私的) 이익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다.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한 업무를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처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 라.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마.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

바.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행위 피해 신고 방해 행위

4.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 피해를 입은 의원, 의회 공무원 등 및 김포시 공무원 등을 말한다.

5. “신고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갑질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① 김포시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의장은 갑질 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③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의회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갑질 행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대책 수립 및 시행) ① 의장은 김포시의회의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근절을 위한 추진과제 및 세부 시행방법

3. 소요예산 및 자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의장이 갑질 근절 대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김포시의회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갑질 행위 피해 신고 접수
2. 피해자 심리 및 법률 상담
3. 2차 피해 모니터링 등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지원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의장은 신고지원센터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갑질 행위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우 피해자나 신고자를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① 갑질 행위 피해자나 대리인은 신고지원센터

에 갑질 행위 피해에 대한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 행위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갑질 행위를 한 사람(이하 “갑질행위자”라 한다)
3. 갑질 행위의 내용
4.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의장이 제시하는 기간 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술로 신고를 접수받는 사람(이하 “접수자”라 한다)은 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신고자에게 다시 읽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접수자는 신고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녹취하는 방법으로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받을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이 갑질 신고를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대리인의 인적사항으로 같음한다.

제8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의장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심리상담 치료 및 회복
2. 갑질 행위자와 피해자의 업무분장과 및 업무공간 분리 등 신변 보호 조치
3.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긴급보호 등 지원체계 구축
4.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5. 그 밖에 의장이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갑질 신고와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 등의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누설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③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④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10조(보복 행위의 신고) ① 피해자 및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한 처우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경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거짓 신고의 금지) 신고자가 거짓으로 갑질 신고를 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제12조(협조자 보호) 신고자 외에 진술이나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갑질 신고의 내용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9조부터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3조(징계 처분 등) ① 의장은 관련 기관의 조사결과 의원이 갑질 행위자로 확인된 경우, 「김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79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김포시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관련 기관의 조사결과 의회 공무원 등이 갑질 행위자로 확인된 경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직장교육 의무화)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의원 및 의회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갑질 근절 대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갑질 근절 대책의 최초 계획은 2024년에 수립한다.

제3조(갑질 예방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갑질 예방 교육의 최초 교육은 2024년에 실시한다.